



제429회국회(정기회)
제7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검 토 보 고

〈데이터센터 구축시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등 설치 면제〉
■ 구자근의원 대표발의(의안번호 제2212071호)

2025. 11.

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박 희 석

목 차

I . 제안경위	1
II 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	1
III . 검토의견	2

I. 제안경위

1. 제 안 자 : 구자근의원 등 12인
2. 제 안 일 : 2025. 8. 8.
3. 회 부 일 : 2025. 8. 11.

II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건물, 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는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함.

그런데 지난 2022년 ‘판교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’ 사례에서 보듯이 데이터센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장애로 전 국민의 불편 및 국가적·산업적 피해가 초래될 수 있는데, 최근 전기자동차 배터리 결함, 과충전으로 인한 과열 등으로 건물 주차장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(안 제 11조의2제1항 단서 신설).

Ⅲ. 검토의견

개정안은 공공건물이나 공중이용시설 등에 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 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내용임.

현행	개정안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. 다만, 해당 대상시설에 데이터센터(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 제40조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말한다)를 구축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u>
1. ~ 4.(생략)	1. ~ 4.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② ~ ⑫ (생략)	② ~ ⑫ (현행과 같음)

「지능정보화 기본법」에 따른 데이터센터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하여 통합 운영·관리하는 시설로서¹⁾, 데이터센터가 화재 등으로 파괴되는 경우 데이터센터의 통신기반에 근거하여 작동하던 국가기능·국민경제 상의 여러 활동이 중단될 수 있음.

개정안은 데이터센터 방재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경우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임.

내연기관 자동차 화재 중 주차 중 발생한 화재가 26.6%에 불과하나 전기자동차 화재 중 주차 또는 충전 중 발생한 화재가 44.6%에 달하여²⁾ 전기자동차의 경우 주차 또는 충전 중 화재 가능성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,

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화재발생 시 열폭주로 인해 다른 화재에 비해 진화에 어려움이 있는 점³⁾,

1)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(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)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·관리하는 시설(이하 "데이터센터"라 한다)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2) 소방청 보도자료, 「소방청, 본격 나들이철 차량화재 주의 당부」, 2024.4.

2022년 ‘판교 데이터센터 건물 화재’, 2025년 ‘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’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데이터센터에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기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점을 고려할 때,

개정안과 같이 데이터센터 건물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하여 데이터센터의 정상적 기능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.

다만 2024년 기준 전기자동차 1만대 당 화재건수(1.07대)가 내연기관차 1만대 당 화재건수(1.60대)에 비해 오히려 적은 점,

화재예방 및 진압기술 적용과 소방시설 확충을 통해 전기자동차 등의 화재를 예방하고 조기진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센터 건물에 원천적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자 하는 동 법률 취지⁴⁾와 달리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위험시설로 규정하는 낙인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.

3) 보험연구원, 「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」, 2024.9.

4)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(목적) 이 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환경의 향상을 도모하며 국가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<표 1> 내연기관차 및 전기자동차 화재건수

구 분	차량등록대수		차량화재건수 (1만대당 건수)	
	내연기관차	전기자동차	내연기관차	전기자동차
2022년	23,913,093	389,855	3,607 (1.51)	43 (1.10)
2023년	23,828,911	543,900	3,625 (1.52)	72 (1.32)
2024년	23,551,263	684,244	3,760 (1.60)	73 (1.07)

*출처: 국토교통부(차량등록대수), 소방청(차량화재건수)

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「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」을 수립하여 배터리 관리시스템(BMS)을 통한 실시간 배터리 위험 감지,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통한 과충전 제어, 이동식 수조 및 질식소화포를 활용한 화재진압 등을 추진 중⁵⁾인 상황으로,

관련대책을 통해 전기자동차로 인한 대형화재 방지가 가능하기에 데이터센터에 대한 충전시설 설치 면제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임.

문 의 처

02)6788-5460

5) 국무조정실, 「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」, 2024.9.